

2020년도
용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2. 24. ~ 2. 27.(4일간) / 2017. 2월부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4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4건 (주의 8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835,78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2018년 산불예방 주민홍보 및 서명운동 추진

- 경로당 및 주요 등산로 산불예방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
- 서명운동 및 예방홍보를 통한 주민 모두의 산불감시원화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4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용산면	총 14건 [공통5, 총무4, 맞춤형복지1, 민원봉사1, 산업3]	주의 8 시정 6		회수 4건 835,780원
1	공통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주의		
2		◦ 공가 사용 부적정	주의		
3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57,000원
4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주의		
5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621,780원
6	총무	◦ 회계관계 공무원의 대리지정 및 이동보고 소홀	주의		
7		◦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주의		
8		◦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9		◦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주의		
10	맞춤형복지	◦ ○○○○○○○○○○○○○○○○○ ○○○○부적정	주의		
11	민원봉사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시정		
12	산업	◦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 기준 부적정	주의		
13		◦ 소규모사업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4,300원
14		◦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82,70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현 황】

○ 지연현황

구 분	근무일자	개 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1	2017.03.18.(토)	09:04:06	18:07:17	-	-	
2	2017.04.08.(토)	09:02:32	18:03:25	-	-	
3	2017.04.30.(일)	09:03:23	18:22:29	-	-	근무일지 지연(11일)
4	2017.05.28.(일)	09:07:54	18:06:24	-	-	
5	2017.06.24.(토)	08:39:36	17:59:08	-	-	
6	2017.07.08.(토)	09:01:04	18:04:25	-	-	
7	2017.08.12.(토)	09:01:50	18:08:33	-	-	근무일지 지연(9일)
8	2017.08.15.(화)	09:03:23	18:01:47	-	-	공휴일
9	2017.09.16.(토)	09:00:08	18:03:04	-	-	
10	2017.09.17.(일)	09:02:17	18:08:50	-	-	
11	2017.10.01.(일)	09:00:17	18:11:49	-	-	
12	2017.10.02.(월)	08:22:13	17:58:27	-	-	공휴일
13	2017.10.07.(토)	09:01:22	18:19:41	-	-	
14	2017.10.28.(토)	09:03:44	18:00:28	-	-	
15	2017.10.29.(일)	08:33:13	17:57:42	-	-	
16	2017.12.03.(일)	09:01:22	18:16:13	-	-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제	세트	직급	성명	
17	2017.12.16.(토)	08:52:59	17:59:00	-	-	
18	2017.12.31.(일)	09:02:42	18:25:15	-	-	
19	2018.05.27.(일)	09:00:55	18:06:44	-	-	
20	2018.06.10.(일)	09:36:10	18:09:05	-	-	
21	2018.06.16.(토)	08:29:59	17:58:59	-	-	
22	2018.07.15.(일)	08:29:47	17:59:59	-	-	
23	2018.07.22.(일)	08:48:08	17:52:32	-	-	
24	2018.08.05.(일)	08:51:00	17:56:03	-	-	
25	2018.09.02.(일)	09:36:01	18:06:51	-	-	
26	2018.09.23.(일)	08:21:13	17:56:17	-	-	
27	2018.09.26.(수)	09:01:37	18:05:14	-	-	공휴일
28	2018.10.21.(일)	08:44:58	17:53:40	-	-	
29	2018.12.15.(토)	09:07:45	18:12:27	-	-	
30	2018.12.16.(일)	08:57:56	17:59:53	-	-	
31	2019.07.06.(토)	08:52:31	17:58:12	-	-	
32	2019.12.15.(일)	09:01:54	18:03:06	-	-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면장에게 하여야 함.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럼에도, 2017. 3. 18.(일) ○○○급 ○○○ 등 7명은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출근 시 20회 지각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12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세트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특히, 행정9급 박미나의 경우 2017. 4. 30.(일), 2017. 8. 12.(토)에 대한 당직근무일지를 9 ~ 11일 지연하여 보고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 및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현 황】

○ 공가 부적정 사용 내역

사용일	성 명	직 급	사유	비고
2018.05.09.	-	-	도 전입시험 응시	
2018.09.03. 2019.08.02.	-	-	건강검진	
2018.09.05. 2019.06.07.	-	-	건강검진	
2019.10.19. 2019.08.09.	-	-	건강검진	
2017.12.18. 2018.04.27.	-	-	건강검진	
2018.06.28. 2019.05.24.	-	-	건강검진	
2017.12.08. 2018.10.02.	-	-	건강검진	
2018.10.31. 2019.07.18.	-	-	건강검진	
2018.10.29. 2019.12.30.	-	-	건강검진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공가사유에는 해당하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2년에 1회에 한해서만 인정 됨.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급 ○○○의 전입시험 응시 및 ○○○급 ○○○ 외 7명의 2년 연속 건강검진에 대해 공가처리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7,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1. 식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출장시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2017.10.13.	-	2017.9.28.	정부24사용자교육참석	14:00~18:00	14,000	7,000	7,000

2. 일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관용 차량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합계					100,000	50,000	50,000
2018.03.30.	-	2018.03.22.	풍수해보험사업 직무교육참석	사용	20,000	10,000	10,000
2018.06.05.	-	2018.05.25.	농지 및 직불제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2018.07.18	-	2018.06.27.	축산 및 직불제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2018.07.18	-	2018.06.28.	축산 및 직불제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2018.07.18	-	2018.06.29.	축산 및 직불제업무추진	사용	20,000	10,000	10,000

【위법부당사항】

- 관외출장비 중 식비는 출장시간 내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 1일 20,000원(3식기준) 한도에서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비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해야하나,

- 용산면에서는 위 [현황 1]과 같이 ○○○급 ○○○에게 출장시간 중 1식에 대한 식비만 지급해야함에도 2식 기준 식비를 지급하였으며, [현황 2]와 같이 ○○○급 ○○○ 외 2명에 대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만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하게 지급한 여비 57,000원을 회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리 ○○○○○공사 준공금 지급	2018.05.17.	2,232	60	50	10	
○○리 ○○○○○공사 준공금 지급	2018.05.17.	미달	40	0	40	미대상
○○면 시가지 ○○○○○공사(2차)	2018.06.12.	3,818	120	90	30	
○○년 ○○○○○○○○○○ 장비임차료 지급	2018.06.12.	9,050	130	220	-90	물품구입 기준 적용
○○○○○○○○사업 장비임차료 지급	2018.10.18.	4,000	0	100	-100	매입누락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2018.05.17. 지급한 ○○건설(주)과 계약한 ○○리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거나 용역계약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기준가를 적용하여 착오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각종 계약시 계약자가 매입 비율에 맞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는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21,78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미준수시간	적정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7-02-04	-	-	토요일	현업	9:28	17:01	213	240	산불근무
2017-02-05	-	-	휴일	현업	11:52	17:02	70	240	산불근무
2017-02-05	-	-	휴일	현업	10:00	17:02	182	240	산불근무
2017-02-11	-	-	토요일	현업	9:22	18:00	278	240	-
2017-02-11	-	-	토요일	현업	10:07	18:00	233	240	산불근무
2017-02-11	-	-	토요일	현업	12:30	18:00	90	240	구제역근무
2017-02-12	-	-	휴일	현업	10:14	17:00	166	240	산불근무
2017-02-12	-	-	휴일	현업	9:00	17:59	299	240	
2017-02-12	-	-	휴일	현업	9:15	18:00	285	240	구제역근무
2017-02-12	-	-	휴일	현업	9:00	17:59	299	240	산불근무
2017-02-18	-	-	토요일	현업	10:33	18:00	207	240	산불근무
2017-02-19	-	-	휴일	현업	10:00	17:39	219	240	산불근무
2017-02-19	-	-	휴일	현업	10:00	17:58	238	240	산불근무
2017-02-26	-	-	휴일	현업	10:52	18:00	188	240	산불근무
2017-03-26	-	-	휴일	현업	10:28	17:44	196	240	산불근무
2018-02-10	-	-	토요일	현업	9:53	18:00	7	480	산불근무
2018-02-17	-	-	토요일	현업	11:02	17:07	125	240	산불근무
2019-02-03	-	-	휴일	현업	10:00	18:00	240	240	산불근무 (강수량13.5mm)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미준수시간	적정시간	비고
			구분		(분)	(분)	(분)	(분)	
2019-11-17	-	-	휴일	현업	10:00	16:37	157	240	산불근무
2019-11-24	-	-	휴일	현업	9:50	18:00	10	480	산불근무
2019-12-01	-	-	휴일	현업	9:51	18:00	249	240	산불근무 (강수량13.0mm)
2019-12-01	-	-	휴일	현업	10:00	14:03	3	240	산불근무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160	415	575	5,371,650	160	349	509	4,749,870	621,780	
-	-	11,074	10	17	27	298,990	10	8	18	199,330	99,660	2017. 2월분
-	-	11,074	10	15	25	276,850	10	12	22	243,620	33,230	2017. 2월분
-	-	11,074	10	18	28	310,070	10	14	24	265,770	44,300	2017. 2월분
-	-	10,003	10	16	26	260,070	10	12	22	220,060	40,010	2017. 2월분
-	-	10,003	10	6	16	160,040	10	5	15	150,040	10,000	2017. 2월분
-	-	10,003	10	51	61	610,180	10	48	58	580,170	30,010	2017. 2월분
-	-	8,980	10	29	39	350,220	10	25	35	314,300	35,920	2017. 2월분
-	-	8,980	10	34	44	395,120	10	27	37	332,260	62,860	2017. 2월분
-	-	8,117	10	21	31	251,620	10	16	26	211,040	40,580	2017. 2월분
-	-	8,117	10	21	31	251,620	10	12	22	178,570	73,050	2017. 2월분
-	-	10,003	10	23	33	330,090	10	20	30	300,090	30,000	2017. 3월분
-	-	8,357	10	14	24	200,560	10	12	22	183,850	16,710	2018. 2월분
-	-	8,528	10	45	55	469,040	10	41	51	434,920	34,120	2019. 2월분
-	-	8,528	10	53	63	537,260	10	50	60	511,680	25,580	2019.11 월분
-	-	11,634	10	8	18	209,410	10	7	17	197,778	11,640	2019.12 월분
-	-	8,528	10	44	54	460,510	10	40	50	426,400	34,110	2019.12 월분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불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당일 강우량(눈 또는 비)이 5mm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있음.
- 또한, 농정과외의 구제역방역근무 및 안전관리과의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근무 시에는 읍면에서 편성한 근무자 명단에 따라 주중 및 주말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 8시간,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용산면에서는 [현황 1]에서와 같이 ○○○급 ○○○ 외 13명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 2]에서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621,78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과오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621,78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대리지정 및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부재 현황

회계직명	직 급	성 명	부재일	비고
지출원	-	-	2019.12.4. , 2019.12.26.	연가

○ 지급명령 승인내역

연번	지급번호	지급명령내용	지급액	지급일자	작성자	승인자
계		32건	37,389,300			
1	586	○○○○○○○○○○지급	432,000	2019.12.04.	-	-
2	587	○○○○○○○○○○ 지급	540,000	2019.12.04.	-	-
3	588	○○○○○○○○○○ 지급	300,000	2019.12.04.	-	-
4	589	○○○○○○○○○○ 지급	2,613,320	2019.12.04.	-	-
5	593	○○○○○○○○○○ 지급	20,000	2019.12.04.	-	-
6	167	○○○○○○○○○○○○○○○○ 지급	50,000	2019.12.26.	-	-
7	168	○○○○○○○○○○ 지급	1,307,200	2019.12.26.	-	-
8	169	○○○○○○○○○○ 지급	109,000	2019.12.26.	-	-
9	170	○○○○○○○○○○ 지급	756,000	2019.12.26.	-	-
10	171	○○○○○○○○○○ 지급	5,150,570	2019.12.26.	-	-
11	172	○○○○○○○○○○ 납부	96,300	2019.12.26.	-	-
12	624	○○○○○○○○○○ 구입	479,000	2019.12.26.	-	-
13	625	○○○○○○○○○○ 지급	680,000	2019.12.26.	-	-

연번	지급번호	지급명령내용	지급액	지급일자	작성자	승인자
15	626	○○○○○○○○○○○ 지급	1,408,070	2019.12.26.	-	-
16	627	○○○○○○○○○○○ 구입	275,000	2019.12.26.	-	-
17	628	○○○○○○○○○○○구입	165,000	2019.12.26.	-	-
18	629	○○○○○○○○○○○지급	120,870	2019.12.26.	-	-
19	630	○○○○○○○○○○○ 지급	26,400	2019.12.26.	-	-
14	631	○○○○○○○○○○○ 지급	3,300	2019.12.26.	-	-
20	633	○○○○○○○○○○○ 지급	3,000,000	2019.12.26.	-	-
21	634	○○○○○○○○○○○ 지급	200,000	2019.12.26.	-	-
22	635	○○○○○○○○○○○ 지급	3,000,000	2019.12.26.	-	-
23	636	○○○○○○○○○○○ 지급	1,500,000	2019.12.26.	-	-
24	637	○○○○○○○○○○○ 지급	920,000	2019.12.26.	-	-
25	638	○○○○○○○○○○○ 구입	440,000	2019.12.26.	-	-
26	639	○○○○○○○○○○○ 지급	540,000	2019.12.26.	-	-
27	640	○○○○○○○○○○○ 지급	1,705,000	2019.12.26.	-	-
28	641	○○○○○○○○○○○ 수리	594,000	2019.12.26.	-	-
29	642	○○○○○○○○○○○ 지급	30,000	2019.12.26.	-	-
30	643	○○○○○○○○○○○ 지급	1,511,890	2019.12.26.	-	-
31	644	○○○○○○○○○○○ 지급	1,091,670	2019.12.26.	-	-
32	645	○○○○○○○○○○○ 지급	8,324,710	2019.12.26.	-	-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2018.01.01.	-	-	미보고
	2018.07.01.	-	-	미보고
	2020.01.01.	-	-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2017.07.20.	-	-	보고
	2019.08.01.	-	-	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8.01.01.	-	-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 12. 4., 2019. 12. 26. 양일 간 지출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년 11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외 31건에 대한 지급명령을 승인하여 지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 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대해서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지급현황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 호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7년 7월 이장수당 지급	-	제299호	2017. 7.19.	4,600	
2017년 12월 이장수당 지급	-	제539호	2017.12.13.	4,600	
2018년 4월 이장수당 지급	-	제145호	2018. 4.17.	4,600	
2018년 5월 이장수당 지급	-	제207호	2018. 5.17.	4,600	
2018년 6월 이장수당 지급	-	제269호	2018. 6.21.	4,600	
2018년 7월 이장수당 지급	-	제331호	2018. 7.18.	4,600	
2018년 10월 이장수당 지급	-	제462호	2018.10.18.	4,600	
2018년 12월 이장수당 지급	-	제594호	2018.12.19.	4,600	
2019년 6월 이장수당 지급	-	제261호	2019. 6.19.	4,600	
2019년 11월 이장수당 지급	-	제554호	2019.11.22.	4,600	
2020년 2월 이장수당 지급	-	제54호	2020. 2.14.	6,900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2017년 7월 외 10건의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조기 또는 지연 지급하여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6.01.12.	-	-	-	업무용	

2. 카드사용 결제계좌 잔액

기 간	내 용	잔액	비고
2017.02.~2020.02.	원인불상의 잔액	206,050원	-

3. 포인트 세입 미조치 현황

카드번호	신용카드회사 (은행)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액 ('20.1.17기준)	현금전환일자	현금전환금액 (원)	비 고
-	-	25,839원	-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

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위 [현황 2]와 같이 감사범위 대상인 2017년 2월부터 2020. 1월 까지 원인불상의 금액(206,050원)이 카드 결제계좌에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잔액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등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현황 3]과 같이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카드사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의 잔액이 일치되도록 계좌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25,839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세입조치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미공개 현황

지출일	내 용	집행액(원)	비고
2017-05-12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720,000	개정전 기준 (50만원이상 공개)
2017-09-29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650,000	
2017-12-26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직원 격려 급식제공	648,000	
2018-02-20	설명절 소속(상근)지구연 격려물품 구입	540,000	
2018-12-12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600,000	
2019-04-19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52,000	2019.4.18.개정 (전체공개)
2019-05-09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60,000	
2019-05-09	면정발전 격려 기관장 및 직원 급식제공	52,000	
2019-05-09	면정발전 격려 기관장 및 직원 급식제공	132,000	
2019-05-29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282,800	
2019-06-05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22,000	
2019-06-05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215,000	
2019-06-19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16,000	
2019-06-24	면정발전 격려 기관장 및 직원 급식제공	45,000	
2019-07-04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17,100	
2019-07-19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11,350	
2019-07-31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80,000	
2019-08-05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51,000	

지출일	내 용	집행액(원)	비고
2019-08-05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90,000	2019.4.18.개정 (전체공개)
2019-08-13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120,000	
2019-08-22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83,000	
2019-08-28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215,000	
2019-08-30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34,200	
2019-09-04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76,000	
2019-09-11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349,600	
2019-09-11	2019년 추석 명절 소속(상근)직원 격려 물품 구입	532,000	
2019-09-20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38,000	
2019-09-30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317,800	
2019-10-07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80,000	
2019-10-07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	140,000	
2019-10-18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18,000	
2019-11-11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120,180	
2019-11-11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50,000	
2019-11-11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30,000	
2019-11-27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차녀 직원 격려물품 구입	26,000	
2019-11-20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149,480	
2019-11-27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간식 제공	66,200	
2019-11-27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 직원 격려 급식 제공(수정)	160,000	
2019-11-29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직원 격려 간식 제공	60,000	
2019-12-20	각종회의 참석자 및 내방객 접대 음료수 구입	301,000	
2019-12-20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직원 격려 간식 제공	60,000	
2019-12-20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직원 격려 간식 제공	40,000	
2019-12-26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직원 격려 만찬 제공	540,000	
2019-12-20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소속상근직원 격려 오찬 제공	150,000	
2019-12-20	내방객 접대용 음료수 구입	165,000	
2019-12-26	내방객 접대용 음료수 구입	440,000	
2019-12-27	소속 상근직원 격려 간식 제공	408,290	
2020-01-20	각종회의 및 내방객 접대용 음료수 구입	644,000	
2020-01-20	내방객 접대용 및 회의용 음료 구입	100,000	
2020-01-23	소속 상근 직원 격려 식사 제공	90,000	
2020-01-31	2020년 설 명절 소속(상근)직원 격려 물품 구입	600,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2019. 4. 18.)전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정(2019. 4. 18.)후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2016년 2월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건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 ○○ 집행 부적정

【현 황】

○ 집행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행사운영비	2018.11.20.	-	2,490,000	카드결제 계약미체결

【위법부당사항】

- 용역 수의계약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용역비 원가계산을 하고 업체 간 견적을 받아 과업의 내용을 확인하여 업체를 결정, 결정된 업체와의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이 이행되면 검사 후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을 집행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만 첨부하여 일반지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현황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	차량번호	사망일	적정상속일	상속일	지연기간
○○○	○○○	-	충북영동나 ○○○○	2015.05.23.	2015.11.18.	2017.04.07.	507일
○○○	○○○	-	충북영동나 ○○○○	2016.01.23.	2016.07.20.	2017.10.27.	465일
○○○	○○○	-	충북영동가 ○○○○	2016.02.23	2016.08.20.	2018.11.05.	808일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4항6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용산면에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 외 2명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수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 외 2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기준 부적정

【현 황】

○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3년간 채용현황

연번	산불감시원 연도별 채용현황					
	2017년 봄	2017년 가을	2018년 봄	2018년 가을	2019년 봄	2019년 가을
1	이○○	이○○	이○○	이○○	이○○	
2	김○○	김○○	김○○	김○○	김○○	김○○
3	이○○	이○○	이○○	이○○	이○○	
4	민○○	민○○	연령초과	민○○	민○○	민○○
5	김○○	김○○	김○○	김○○	김○○	김○○
6	박○○	박○○	박○○	박○○	박○○	박○○
7	김○○	김○○	연령초과	김○○	김○○	김○○

【위법부당사항】

○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림청) 공통적용 4.참여자 근로관리 나. 중복참여와 반복 참여의 제한 2) 반복 참여의 제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되어 있으며,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 제한함.

- 또한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이 가능함.
- 그럼에도, 용산면에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을 채용함에 있어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의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이○○ 외 6명에 대하여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연속하여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을 채용한바 있으며, 또한 2018년 가을철 기간제산불감시원 모집 시 “2018년 봄철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시 연령초과로 탈락된 대상자(민○○, 김○○)”를 채용하였음.

【처분내용】

- 용산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채용 시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4,3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현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감액금액 (원)	비고
계						74,300	제경비포함
○○○○○○공사	9,945	-	2019.03.05	2019.03.11	2019.03.28	24,600	
○○○○○○공사	12,500	-	2019.04.03	2019.04.08	2019.05.10	29,100	
○○○○○○공사	9,000	-	2019.04.11	2019.04.17	2019.05.22	20,600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정·반영하여야 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와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 03. 05. ○○건설(주)와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사용이나 면제사항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건설업자가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액동의서 항목에도 누락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여, 상기 3건에 합계 74,3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처분내용】

- 과다 지급된 공사비 74,300원을 회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82,7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현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감액금액 (원)	비고
○○○○○○공사	12,627	-	2019.03.05	2019.03.11	2019.03.28	82,700	제경비포함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 산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 03. 05. (주)성산건설과 계약하여 완료된 ‘○○○○○○공사’ 건에서는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82,7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처분내용】

○ 과다 지급된 공사비 82,700원을 회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